

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0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노동자의 권리존중과 보호를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 도시 간 우수 노동정책 및 지원방안 공유와 확산이 필요하여 도시 간 국제협의체를 구성하고,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성을 위한 사무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, 정례적인 국제포럼 및 공동연구, 인적자원교류 등을 통해 도시노동모델을 구축하여 시민에 대한 정책체감도를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시장의 노력
(안 제12조제1항)
- 나.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시장의 업무
 - (1) 세계 각국의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구축(안 제12조제2항제1호)
 - (2) 국제노동기구의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도시노동모델의 구축 및 확산(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)

- (3) 도시정부의 노동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·운영(안 제12조제2항제4호)
- (4)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(안 제12조제2항제5호)
- (5)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노동정책 분야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지원(안 제12조제2항제6호)

다.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지원(안 제12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근로기준법」, 「근로복지기본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2019. 3. 21. ~ 4. 10.) 결과: 의견없음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노동자 권리존중 및 도시노동모델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)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,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 및 계획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도시 정부가 참여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의 구축
2. 국제노동기구(ILO)의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도시노동모델(이하 “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”이라 한다)의 개발 및 확산
3. 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의 추진

4. 도시정부의 노동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·운영
 5.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(「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)의 유치 및 지원
 6.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노동정책 분야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지원
 7. 그밖에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
- ③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 앞에 “제3장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”를 삭제한다.

제13조 앞에 “제3장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”를 삽입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3장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12조(노동자 권리존중 및 도시노동모델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)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②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,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.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 및 계획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의 구축</u> <li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2. 국제노동기구(ILO)의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도시노동모델(이하 “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”이라 한다)의 개발 및 확산</u> <li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3. 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의 추진</u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20 1720 384 1760"><신설></p> <p data-bbox="183 1787 639 1827">제12조 ~ 제21조 (생략)</p>	<p data-bbox="839 315 1398 555">4. <u>도시정부의 노동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·운영</u></p> <p data-bbox="839 580 1398 954">5. <u>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(「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)의 유치 및 지원</u></p> <p data-bbox="839 981 1398 1155">6. <u>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노동정책 분야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지원</u></p> <p data-bbox="839 1182 1398 1422">7. <u>그밖에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</u></p> <p data-bbox="839 1449 1398 1688">③ <u>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858 1715 1342 1756"><u>제3장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</u></p> <p data-bbox="807 1783 1398 1890">제13조 ~ 제22조 (현행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정례개최
-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및 사무국 운영 비용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주요개정 내용에 따른 예상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임
(예상금액 연 4억 1천만원 수준)

가.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공동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사무국 설립(안 제12조제2항제5호 관련)

- 임대료 : 무상 (서울시 산하기관 내 입주)
- 인건비(2인) : (정)50백만원 (부)30백만원
- 사무관리비(조사비 등) : 30백만원

나.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대륙별·사안별 세미나 개최 및 지원(안 제12조제2항 제6호 관련)

- 행사운영비 : 270백만원
- 사무관리비 : 30백만원

4. 작성자

-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김가영(2133-5527)